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ogle to Appeal India Tax Demand on \\$225 Million for Royaltie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14 pg. 585\)](#)

인도: 구글, 로열티 간주에 따른 과세처분에 항소

2017 년 10 월 23 일 방갈로르 소득세 항소심 법원(Bangalore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은 인도 과세당국이 Google India Private Ltd(이하 "Google India")에게 부과한 USD 2 억 2,480 만(약 2,471 억 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Google India 는 이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Google India 는 2005 년 마케팅 및 유통 계약(Marketing and distribution agreement)에 따라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사로부터 광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AdWords'의 재판매 권한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인도 광고회사들에게 특정 소비자에게 광고물을 노출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 년 인도 과세당국은 Google India 가 아일랜드 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 권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을 원천소득 과세대상인 로열티 거래로 간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세원에 대해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Google India 가 항소하며 약 6 년간 조세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2017 년 10 월 방갈로르 소득세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인정하였고, Google India 가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사에 판권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7 November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하여 대가로 지난 6 년간 지급한 USD 2 억 2,480 만(약 2,471 억 원)을 로열티 즉, 과세대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인도 과세당국 입장

인도 과세당국은 Google India 가 'AdWords'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순 광고공간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AdWords'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국외 소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성격을 광고공간 거래가 아닌 로열티 거래로 분류하였습니다.

Google 입장

Google India 는 Google 소프트웨어의 비독점재판매업자(non-exclusive authorized reseller)로서 Google 사의 지적 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으며, 인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타 기업의 경우 국외 소재 회사에게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가 지급을 로열티로 보지 않은 판례들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전문가들은 인도-아일랜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s)에 명시된 로열티 정의 및 해석, 해당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AdWords'가 중대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항소심 법원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ungary: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updated, including arm's length pricing](#)

헝가리: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업데이트

헝가리 국가경제부(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이하 "NGM")이 지난 10 월 발표한 새로운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이하 "NGM Decree")가 2017 년 11 월 18 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이하 "Decree 22/2009")에 대한 몇 가지 수정 및 보완사항을 포함합니다.

NGM Decree 은 최근 글로벌 BEPS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이전가격보고서(이하 "TPD")를 Master file (이하 "MF") 및 Local file (이하 "LF")로 대체하였습니다.

NGM Decree 에는 MF 작성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Threshold)는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기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던 기업들이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MF 에는 그룹 내 법인 현황, 지배구조, 그룹의 가치사슬, 특수관계사간 약정내용, 법인 별 기능분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F 에는 납세자의 조직구조, 주요사업 및 사업전략, 주요경쟁사, 특수관계거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F 와 LF 의 구비기한은 법인세 신고일까지 입니다. 다만, 그룹의 최종 모회사 소재국의 MF 규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MF 를 법인세 신고일까지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MF 구비기한 전까지 구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MF, LF 의 첫 적용대상연도는 2018 사업연도이므로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는 기존 Decree 22/2009 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NGM Decree 를 2017 사업연도에 미리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외에도 NGM Decree 는 경제분석이 최소한 3 년에 한번씩 수행되어야 하며, 선정된 비교가능거래 및 회사에 대한 재무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그룹간 저부가가치 용역(Low value-added intra group services)에 대하여 3~10% mark-up 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India: Back-Office Functions Won't Trigger Company Residency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14 pg. 585\)](#)

인도: 경영자문 기능은 실질적 관리장소 요건에 해당 안됨

인도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이 인도 내에서 일반적인 '저부가가치 경영자문(Back Office)' 업무를 수행 시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남용할 경우,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과세당국에서 고시한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FY2016-17 부터 적용되며,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내 사업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성립요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에서는 인도 내에서 수행하는 회계, 인사, 급여, IT 인프라 및 일반적인 은행 업무 등 단순지원기능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글로벌 사업소득에 대해 인도 측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 · 급여 (HR · Payroll Function)

- 회계 (Accounting Function)
- IT 인프라 및 네트워크 플랫폼 (IT Infrastructure & Network Platform)
-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Function)
- 일반적인 은행업무 (Routine Banking Operational Procedures)

전문가들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원가경쟁력이 있는 인도에 저부가가치 경영자문 기능을 두고 싶어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실질적 관리장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CRA Releases 2016 APA Report

캐나다 과세당국, 2016년 APA 연차보고서 발표

2017년 11월 캐나다 과세당국(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에서 2016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CRA는 미처리 상태의 APA 건들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초 107건의 APA 건들이 미처리 상태였지만, 2016년 중 26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철회, 12건은 신규 신청이 받아 들여져 90건만이 2016년 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RA는 APA 처리기간을 줄이고자 APA 사전신청단계에서의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CRA는 15개국(미국, 영국, 스위스,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인도, 중국, 포르투갈, 덴마크, 칠레, 오스트리아)의 과세당국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 APA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진행 중인 APA의 약 56%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APA의 절반 이상은 재화거래와 관련된 건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APA의 90%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APA이며, 이 경우, APA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47.3개월(약 4년)로 나타납니다.

APA 란?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A는 납세자들에게 하기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세무조사 대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문제를 해결
- 2)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문제를 제거
- 3)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방법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

4)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할 필요 없음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